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경계 발령, 1.27)에 따라 중증·만성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인 요양비 수급자의 '처방전 발급 목적의 의료기관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예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 부에서는 '동일상병-동일처방'의 경우, 기존 수급자에게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를 허용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을 불임과 같이 시행하니, 요양비 급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례 인정 기준은 2020년 2월 10일 청구분부터 적용

불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 끝.

보건복지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한국당뇨협회, 한국혈관질환학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적수장애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회복기공협회, 한국의료기기유동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박우석 서기관 주철 보험급여과장 이종규 전결 2020.2.10.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692 (2020. 2. 10.)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35 팩스번호 044-202-3934 / pws3863@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경계 발령, 1.27)에 따라, 중증·만성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인 요양비 수급자의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다 음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요양비 지급의 경우, 복막관류액(전문의약품)을 제외한 급여 품목에 대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지급 청구할 수 있음
 - 복막관류액의 경우,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2020.2.28. 시행 예정)에 준하여 환자를 대신하여 가족 등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송하거나 대리수령하도록 할 수 있으며, 최대 처방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함(위기 경보 해제 후 기존 처방기간 환원)
- 요양비 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로서, 기존 처방전에 따른 처방기간이 도래하거나 도과한 경우로, 동일 상병에 대한 동일 처방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최초 처방의 경우나 기존 급여 내역과 다른 상병이나 처방내역에 대한 급여 청구는 적용 제외)
 - 위 특례 급여 품목의 경우 각 요양비 품목별 처방기간 단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위기경보 해제 이후 기존 급여기간이 종료되어 요양비 급여청구를 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전 첨부 필요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 처방전이 없음을 이유로 요양비 품목 판매를 거부할 수 없음
- 상기 기준은 2020년 2월 10일 청구분부터 적용